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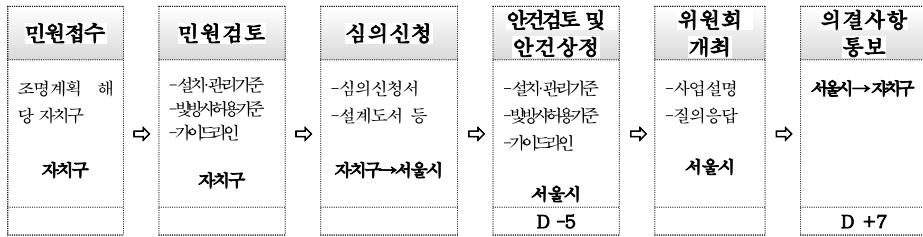
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

□ 관련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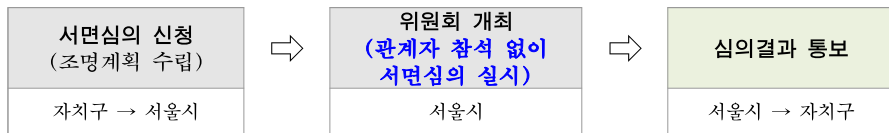
-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
-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0조~제18조

□ 운영절차

○ 심의 일반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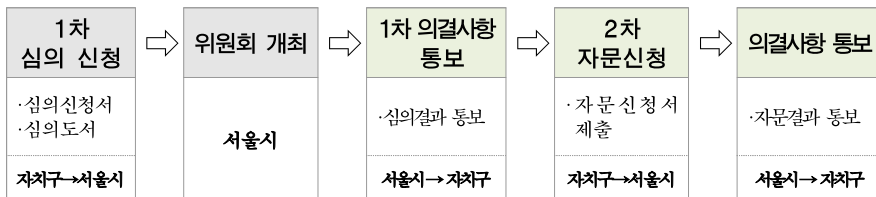


- 서면심의 절차(※ 코로나 19 등 비상시)



※ 관계자 참석 없이 위원회 개최 시 병행 심의 실시 후 의결사항 통보

- 시 역점사업 심의(자문) 절차 ('21.7.1. 시행)



※ 사업부서는 예비준공검사 단계에서 도시경관담당관에 자문 신청

□ 위원회 주요 기능

- 빛공해방지계획·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법 제5조영 제5조)
-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, 해제·변경에 관한 사항(법 제9조, 10조)
- 공간,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·개량·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(자문) 등(조례 제22조)

□ 심의대상

- 공간조명,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, 개량,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
※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(조례 제22조 2항 관련)

구 분	시 설 규 모	비 고
건축물	공공청사	
	연면적 2,000㎡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	
	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탁시설	
공동주택	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	
구조물	교량, 고가차도,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	
공간조명	가로등 50등 초과 계획	' 21.7.1. 이후 적용
	보안등, 공원등 30초과 계획	
	심의 제외 : 공간조명 중 광원 교체 등 단순 개량사업	
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	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, 개량 등	
6. 행사·축제·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명	한시적 휘도기준 초과 시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허용기준 제외 신청	
7. 서울시 역점 사업(권고)	시 역점사업 대상에 해당 시 사업부서는 예비준공검사 단계에서 도시경관담당관에 심의(자문) 신청	' 21.7.1. 이후 적용

- 개량사업 : 단순 LED등기구 교체, 신·증설 및 이설없는 노후 등주 교체
- 사업준공 전 좋은빛관리카드(별지9호) 및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

○ 시 역점사업 적용 기준

-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의 장식조명계획

구 분	시 설 규 모	비 고
건축물	(공공청사) 1.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,000㎡ 이상의 공공청사	
	(건축물) 1.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건축물 2. 16층 이상의 공동주택	
시설물	(도로 및 철도 교량) 연장 500m 이상의 한강상 교량	
	(하천시설) 국가하천에서 시행하는 연장 1km이상 야간경관사업	
도시기반시설	대지면적 10,000㎡ 이상인 광장, 공원, 자연녹지,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	
기타	좋은빛위원회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

- 사업부서는 **예비준공검사** 단계에서 도시경관담당관에 **심의(자문) 신청** (별지 8호)

- 관계법령

- ▶ 건축물·시설물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
- ▶ 도시기반시설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항 (기반시설)

심의시기 : 조명기구 설치 전(실시설계 완료 전)

개최시기 : 화요일(14:00) 수시 개최

회의진행

○ 참석대상 :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

○ 진행방법

- 안전별 계획(안)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 후 위원별 질의 및 응답
- 설명자 퇴실 후 위원회 의결

심의신청 자료 및 내용

○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신청서 1부(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)

○ 심의도서 자료(PPT파일)

〈 세부 조명계획(안) 〉

- ▶ 사업개요 및 조명 계획의 수립 기본 개념
- ▶ 추진경위,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(필요 시)
- ▶ 사업대상지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검토
- ▶ 사업대상지 주변의 주·야간 주변 환경 분석(휘도 및 조도 측정)
- ▶ 빛방사허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조도,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
- ▶ 조명기구 배치도(설치 상세도 포함) 및 성능 사양서(종류, 수량, 용도, 배광곡선, 색온도 자료, 치수, 효율 등)
- ▶ 조명시설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등

○ 재심의 상정안건은 재심의 의결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

미디어파사드 관련 사항

○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구역

-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(25m) 이상 도로에 면하는 필지
- 대로에 면하지 않더라도 ‘명동·남대문·북창동 관광특구’, ‘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’, ‘종로·창계 관광특구’, ‘강남 마이스특구’, ‘잠실특구’, ‘디지털미디어시티(DMC)’ 등은 설치 가능 (단, 패션특구는 지정기간에 한해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운영)
- 서울시 및 자치구가 추진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
- 기타 행사, 축제 등 수립된 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된 계획

○ 미디어파사드 주요 조명계획 수립기준

-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고, 광고는 할 수 없다.
- 빠른 속도 및 반복적인 점멸, 원색적인 콘텐츠는 제작하지 않는다.
- 주거지역 및 일대 주거시설에 면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금지한다.
- 콘텐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.
- 눈부심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※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과 광고조명의 비교

구 분	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	미디어파사드 광고조명
빛방사허용기준 발광표면휘도(평균값)	25cd/m ² 이하	1,500cd/m ² 이하
운영시간	일몰 30분 후 ~ 23시 (시간당 40분 이내 상영)	24시 소등
상영 콘텐츠	예술작품에 한정하고, 광고는 할 수 없음	광고물 등
심의기관	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 (좋은빛위원회)	자치구 광고물 담당부서